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상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5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8.

발 의 자 : 윤상현 · 박 진 · 이현승
김용판 · 김예지 · 태영호
김희곤 · 하영제 · 정경희
최승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·건축물(이하 “토지등”이라 함)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시행령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‘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여러 명을 1인으로 보되,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, 토지 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, 토지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산

정하는 경우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적 측면에서의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)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 산정방법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동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때에는 공유자 1인이 동의하면 해당 공유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때에는 그 공유자 총수를 1인으로 보되, 공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제47조제2항 후단 중 “제34조제4항”을 “제34조제3항 및 제6항”으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동의에 관한 특례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4조(동의에 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동의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때 에는 공유자 1인이 동의하면 해당 공유자가 소유한 토지면 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<u><신설></u>	③ 제1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 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 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때에는 그 공유자 총수를 1인 으로 보되, 공유자 총수의 5분 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 의가 있어야 한다.
② (생략)	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 수의 동의를 받으면 제39조에	⑤ 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47조(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) ① (생략) ②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외에 해당 공설시장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및 점포를 소유한 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. ③·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.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 산정방법----- -----. 제47조(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제34조제3항 및 제6항---- 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--	---